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10

다. 상 정 일 자 : 2003. 10. 10

(제11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임 영 택

나. 제안사유

- 우리군 상수도 요금은 1999. 1. 13 조정된 요금으로 생산원가 857원/톤의 67.1%인 575원/톤에 불과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요금체계를 개선(기본요금 폐지, 요금부과 업종 통폐합:6단계 →4단계)하여 불적약을 유도하고,
-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여 수도시설확충, 수질개선등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등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상수도구경별 요금을 80%까지 현실화함
(안제26조별표제2호,제4호)
- 상수도 업종 6단계→4단계(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로 통폐합
- 기본요금 폐지 및 가산금 하향 조정(5% → 3%)
- 공동주택세대의 요금부과 제도개선
- 옥내누수요금의 일부감면 (수용가 귀책성 사유는 제외)
-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30%감면
- 상수도 공사의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규정
-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손괴자부담금을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안은 먼저 금년 7월 7일 화순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 주된 내용을 보면 급수장치 손료를 상수도 구경별 요금으로 변경하여 13mm의 경우 410원에서 991원으로 242% 인상하였으며 일반적인 20mm관 수용가의 경우 496%인상된 560원대비 2,777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용과 영업용의 현행 요금과 개정된 수도요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대 비 표 -

<가정용>

사용량(t)	현행(원)	개정(원)	비 고
10	3,340	4,230	
15	7,650	6,345	
20	12,750	8,460	
25	13,750	19,150	
30	16,500	22,980	
35	22,400	36,960	

<영업용>

사용량(t)	현행(원)	개정(원)	비 고
30	19,000	22,890	
50	33,500	38,150	
80	81,600	119,120	
110	201,300	163,790	
130	237,900	193,570	
150	274,500	223,350	

- 가정용의 경우 주로 물을 더 아껴쓰는 서민층이라 할 수 있는 20t 이하의 수용가는 수도요금이 내린 효과를 거두고 20t을 초과하는 수용가는 불절약 차원에서 적절한 산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영업용의 경우입니다. 100t이하 수용가의 경우 현행보다 인상됐으며 100t이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는 물값이 너무 싸지는 모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기타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피부담금관련 표준조례 및

지침에 의거 신설된 조항입니다.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7. 천 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